

서울특별시마포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·  
관리등에관한조례(안)심사보고서

96. 3. 30.  
시민보건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96. 3. 6.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96. 3. 11.
- 다. 상정일자 : 제37회 임시회 제1차위원회  
(96. 3. 30.) 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유병식 산업과장)

가. 제안이유

도·소매업진흥법의 전문개정에 따라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마포구 관할구역내에 개설되는 정기시장의 시설 기준 및 운영·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코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정기시장을 정기적 또는 계절적으로 개설되는 시장으로 정의함.(안 제2조)
- 정기시장의 개설 및 시설기준에 대하여 규정함.(안 제4조)
  - 정기시장의 경우
    - 1,000제곱미터이상의 토지
    - 급수시설·배수시설·위생시설(화장실, 오물처리장)
    -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
  - 계절시장의 경우
    - 300제곱미터이상의 토지로서 국·공유지, 사유지, 도로부지에도 개설 가능토록 함

- 계절시장 개설자의 지정기준 및 지정 의·취소에 대하여 규정함.(안 제5조)
- 계절시장을 제외한 정기시장의 운영·관리등에 관하여 규정함.(안 제6조)
- 정기시장의 관리비등의 징수에 대하여 규정함.(안 제8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김건재 전문위원)

- 동 조례안은 도·소매업진흥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 관할구역내 정기시장 개설의 시설기준 및 운영·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을 규정하려는 것임.

○ 정기시장의 시설기준은 1,000m<sup>2</sup>이상의 토지에 급수시설, 배수시설, 위생시설 등의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, 계절시장은 300m<sup>2</sup>이상인 토지에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정기시장의 개설 및 시설기준과 계절시장 개설자의 지정·기준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, 계절시장을 제외한 정기시장의 운영·관리 및 관리비 등의 징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음.

○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근거한 제정안으로 우리 구에는 정기시장의 경우 개설된 시장은 없으나, 향후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시장을 육성하고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질의요지(김동희 위원) : 정기시장·계절시장의 부지는 확보되었는가?

○ 답변요지(유병식 산업과장) : 정기시장은 시골에서 5일·6일·7일장을 의미하는데 도시에서는 거의 필요없으며, 계절시장은 김장시장등 특별히 필요할 때에 300m<sup>2</sup> 이상의 토지만 확보하여 신청하면 국유지나 도로부지에도 개설하게 할 수 있음.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마포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  
운영·관리등에관한조례(안)

의안	67
번호	

제출년월일 : 1996. 3. 6.  
제출자 : 마포구청장

1. 제정이유

○ 도·소매업진흥법의 전문개정에 따라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마포구 관할구역내에 개설되는 정기시장의 시설기준 및 운영·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코자 하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정기시장을 정기적 또는 계절적으로 개설되는 시장으로 정의함(안 제2조)
- 정기시장의 개설 및 시설기준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4조)
  - 정기시장의 경우
    - 1,000제곱미터이상의 토지
    - 급수시설·배수시설·위생시설(화장실, 오물처리장)
    -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
  - 계절시장의 경우
    - 300제곱미터이상의 토지로서 국·공유지, 사유지, 도로부지에도 개설 가능토록 함
- 계절시장 개설자의 지정기준 및 지정의 취소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5조)
- 계절시장을 제외한 정기시장의 운영·관리등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6조)
- 정기시장의 관리비등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8조)
- 3. 조례(안) : 별첨
- 4. 관련근거
- 지방자치법(1995.8.4. 법률 제4959호) 제15조
- 도·소매업진흥법(1995.1.5. 법률 제4889호) 제16조
- 5. 예산조치 필요성 여부 : 필요없음

#### 서울특별시마포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 운영·관리등에관한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도·소매업진흥법(이하 "법"이라한다)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 관할구역내 정기시장개설의 시설기준 및 운영·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"정기시장"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 규정에 따른 일정구역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 또는 계절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정기시장 개설 및 운영·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.

제4조(정기시장의 개설 및 시설기준) ① 정기시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"구

청장"이라한다)이 개설한다. 다만, 계절적으로 개설되는 정기시장(이하 "계절시장"이라 한다)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개설하게 할 수 있다.  
 ② 정기시장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1,000제곱미터이상의 토지. 다만, 계절시장의 경우에는 300제곱미터이상인 토지
  2. 급수시설·배수시설·위생시설(화장실, 오물처리장)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 다만, 계절시장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③ 계절시장의 개설장소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으며, 개설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1. 국·공유지-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사용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.
  2. 사유지-다만, 계절시장 개설자가 토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.
  3. 도로부지-도로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, 간선도로에서 50미터이상 떨어진 지선으로 교통 및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는 장소이어야 한다.

제5조(제절시장 개설자의 지정기준 및 지정의 취소)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절시장 개설자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시장등의 개설자
  2.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
  3. 기타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
-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절시장 개설자로 지정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1. 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시장등의 개설허가가 취소된 때
  2. 제4조제2항의 시설기준에 미달될 때
  3. 계절시장 개설 지정후 1개월이내에 개설하지 아니한 때
  4. 건전한 상거래질서유지를 저해함으로써

소비자에게 피해가 있다고 판단될 때

제6조(정기시장의 운영·관리등) ① 구청장은 정기시장(계절시장은 제외한다. 이하 본조에서 같다)의 운영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관리인을 지정하여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관리인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.

③ 지정받은 시장 관리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시장 관리인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거나 물의를 야기한 경우

2. 질병 또는 기타 사정으로 시장을 관리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

④ 구청장은 정기시장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 또는 폐업일 30일 전에 구보 및 정기시장 개설장소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
제7조(시장개설자의 책무) ① 정기시장개설자 또는 시장관리인은 입주상인들의 공동이익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1. 상거래질서의 확립과 환경개선 및 그 지도

2. 업종별 점포의 합리적 배치 및 점포 시설의 근대화

3. 입주상인 및 그 종업원에 대한 경영지도 및 교육훈련 실시

4. 고객에 대한 서비스향상의 지도

5. 입주상인의 공동사업 추진

6. 기타 시장의 전전한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업의 수행

② 정기시장개설자 또는 관리인은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업무규정 및 사업계획의 범위안에서 입주상인들로부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8조(관리비등의 징수) ① 구청장은 정기시장의 관리인, 계절시장의 개설자로 지정받은 자로 하여금 동시장의 입주자로부터 그 시장부지, 점포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.

② 관리비등의 징수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9조(정기시장개설대장의 비치) 구청장은 별지 서식에 의한 정기시장 개설대장을 비치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별지서식)

#### 정기시장 개설대장

개설일련번호	개설년월일	시장명	소재지	개설자	대지면적	시장연면적	점포수	비고